

#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16
----------	----

제출년월일 : 1999. 4. 1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이유

'99년부터 적립·조성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코자 함.

##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조성 : 법 제56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시수입금, 기타 수입금 (안 제2조)
- 나. 기금의 운용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용(안 제5조)
- 다. 기금운용심의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안 제5조)
- 라. 기금의 관리 : 기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 하며, 부산광역시사하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안 제4조)
- 마. 기금의 용도 : 기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함(안 제3조)
- 바. 회계공무원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방재담당이 됨. (안 제11조)
- 사. 기금의 회계관리 : 기금의 회계는 부산광역시사하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금운용관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안 제10조, 안 제11조)
- 아. 결산 및 보고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12조)

## 3. 관계법령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수습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시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는 사용할 수 없다.

②영 제54조 제1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 위험지역의 표시판 및 안전시설 설치
2. 긴급한 재난발생우려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 자재 등의 구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조성된 기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구청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의 운용기금이 부족할 경우 영 제54조 제1항 제5호의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적립기금의 일부를 운용기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당해연도 운용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적립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용자조건 등) 기금의 용자기간, 용자금리, 용자절차,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세대 당 용자규모와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용자금의 상환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제7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용자금상환기간전이라도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상환할 경우 채무자는 용자받은 날부터 상환일까지 연체 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았을 때
2. 용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용자업무의 대행) ①구청장은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용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약정에 의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회계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방재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3조(위탁사무에 관한 검사) 구청장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고에 대하여 자금의 용자 및 상환과 기타 기금관리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